

태권도 진홍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연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566
----------	------

발의연월일 : 2017. 2. 10.

발의자 : 최연혜 · 곽대훈 · 김정재
정운천 · 경대수 · 김현아
김도읍 · 조훈현 · 강효상
이우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 고,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재판 등의 절차 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21일 「질서위반행위규 제법」이 제정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상충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제2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태권도 진홍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권도 진홍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4조(과태료) ① · ② (생 약)</p> <p>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한다.</p> <p>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한다.</p>	<p>제24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p> <p><u><삭 제></u></p> <p><u><삭 제></u></p>